野 "원점 재협상"… 정치권 다시 격랑 예고

■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향후 정국

野 강력 반발 속 장세환 의원직 사퇴

與 "결정 승복… 논란 종지부 찍어야"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미디어법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며 개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인 만큼 미디어 법을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우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 직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미디어법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재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여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건설 수정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한편 미디어 법 개정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 연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흐지부지됐던 의원직 총사퇴카드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항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헌재의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논리"라고 비난했으며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디어 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완패한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의 판결로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며 한 숨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이날 헌재의 판결을 토대로 정기국회 운영과 향후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등 야권과의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동울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원내외 투쟁 등 강공땐 한나라 협상 나설 가능성도

■ 미디어법 재개정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애초 헌재가 무효 판결을 내려주면 미디어법을 백지화하고 재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유효 판결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어려워진 것.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재 결정 후 즉각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한나라당은 '위헌시비 종결'을 내세우며 재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96년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 '날치기' 논란에 대한 이듬해 7월 헌재의 결정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다. 두 사안 모두 야당에 대한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경우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97년 3월 이미 여야가 정치적 담판을 통해 '3자개입 금지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한 상태여서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미디어법 재개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에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도 재개정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것으로 미디어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0월 재보선에서 패배하고 헌재 결정으로 인한 여야간 극한대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하거나 원내외 병행투쟁 등의 강공카드를 꺼내들 경우 한나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역점 현안이 쌓여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원만한 처리가 불가능한 사업이어서 일단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난 7월 미디어법 협상 결렬 직전에 나왔던 내용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여야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신문사의 종편 및 보도채널 참여 기준 등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절차상 하자 있지만 혼란 우려해 인정

■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왜?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해준 셈이다.

헌재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일견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데서 나온 결론으로 해석된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정치권에서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며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됐던 대리투표는 결국 사실로 인정됐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방송사 화면 등을 살펴본 결과, 목적만 달랐을 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상적 표결이라면 나올 수 없는 이례적인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에 비춰봤을 때 신문법 표결은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으므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을 놓고 재판관 5대 4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결정을 내놨다. 조대현 재판관 등 다수는 표결이 끝난 상태에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시 표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결이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특정 안에 반대하는 경우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반대 뜻을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반면 이 소장 등 나머지 4명은 과거 국회의 실무 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재표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7대 2, 방송법의 경우 6 대 3 의견으로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두 법률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은데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 입법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낙마

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직 상실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으며, 공 교육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준용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진애씨 비례대표 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주 국회 비례대표 후보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로 처리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당 1명, 친박연대 3명에 대한 의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진애(56)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친박연대에선 김혜성(53) 정책국장, 윤상일(54) 사무부총장, 김 정(57)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